

해상풍력 개발, 민간 발굴에서 국가 주도 계획입지 체계로 전환

해당국가	한국	기관(기업)	기후에너지환경부	동향분야	정책	국토교통 기술분류	플랜트
------	----	--------	----------	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-

-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2026년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3월 26일부터 국가 주도 계획입지 제도를 시행
 -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개별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적합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고 관련 절차를 통합 관리 체계로 전환
 - 정부는 전력계통, 군 작전성, 주민 수용성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보급을 추진할 방침
 - 이번 시행령은 해상풍력발전위원회 구성·운영, 예비지구 지정 절차, 민관협의회 구성·운영, 사업자 선정 절차, 환경성 검토 절차 등 계획입지 제도의 운영 기준을 규정
 - 해상풍력법 시행을 통해 정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범정부 협력 기반의 입지 선정 및 사업 추진 체계 마련
 -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예비지구·발전지구 지정 등 주요 정책을 심의·의결
 - 정부가 풍황, 어업활동, 환경 영향, 해상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이후 경제성·수용성·계통 검토를 거쳐 발전지구로 확정
- 해상풍력법은 인허가 절차 효율화와 지역 수용성 확보를 함께 추진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정부 주도의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 확대 체계 마련
 - 발전지구 내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해 사업 추진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불확실성 완화 추진
 - 10개 부처, 28개 법률에 따른 42개 인허가 절차를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사업 추진 기간 단축과 행정 부담 완화 기대
 - 법 시행일 이후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, 연내 1차 예비지구 후보지 발굴 및 후속 고시 마련 등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
 - 지방정부 주도의 수용성 확보 체계를 통해 주민 참여와 지역 이익공유 기반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
 - 지방정부는 민관협의회를 운영해 주민 수용성 확보와 지역 이익공유 방안을 논의하며 지역 의견을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할 예정
 - 민관협의회 위원은 어업인·주민 대표가 전체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해 지역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

※ 출처 : 기후에너지환경부(2026.03.17.), 해상풍력 개발, 국가 주도 '계획입지'로 전환... 3월 26일부터 제도 시행